

<회원권 정지 안내문>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3장 제15조(교인의 의무) 및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에 따라, 교인의 회원권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개정 2012.11.16)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사전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회원권이 정지되며, 1년 이상 경과 시 실종교인으로 간주됩니다. 단, 교회 분립 또는 개척을 위한 파송의 경우에는 1년간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정 2024.12.12.)

이에 따라 아래 명단에 포함된 교우들은 위 조항에 의거하여 회원권이 정지되었음을 공지합니다. 해당 교우들 중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8월 17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어 본인의 회원권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명단 - 가나다순(직분 생략)>

강군자	강미자	강석원	강순금	강주일	강지혜	고채영	곽수빈	곽창선	권성준
권종민	권청화	김광일	김금미	김기복	김단비	김동준	김명옥	김미덕	김미정
김미화	김민영	김석원	김선영	김성겸	김성권	김세준	김수철	김숙현	김 신
김신원	김예후	김원민	김유나B	김유동	김윤환	김은희A	김은희B	김재우	김재원
김정화	김정후	김종훈	김주연	김주현	김주희A	김준수	김지훈	김태권	김태완
김하나	김현숙	김현주	노기영	노명남	노영애	노영주	마현숙	명예지	문애자
문정화	문효진	박경아	박경호	박동진	박미현	박옥자A	박은정	박인미	박점우
박정자	박종숙	박창민	박천길	박현숙	박호영	방지은	방지현	배기창	배하늬
변재남	서명준	서정선	손대원	손주원	송기님	송기선	송기은	송미분	송민아
송주찬	송찬석	송찬양	신완순	심경우	심항기	안규순	안성기	안성아	오서택
오세양	오예나	오예지	오이슬	오환희	용명자	우명숙	우백호	우승미	유승열

유은빈	윤석균	윤성원	윤영섭	윤정용	윤희성	이도규	이명옥	이민혁	이상락
이선희	이소명	이소호	이수원	이수진	이영옥	이은자	이은진	이은하	이은혜
이정은	이준성	이준열	이지숙	이창주	이채혜	이하은	이해정	이혜민	이화춘
임강숙	임광숙	임민예	임봉식	임성훈	임순남	임시남	임원빈	임정빈	임정은
임지근	임향희	임형빈A	임형빈B	장도현	장미나	장수미	장한나	장혜란	전미나
전용만	정덕순	정정순	정지원	정희선	조병선	조숙자	조영석	조영숙	조영욱
조태호	조현구	지성한	진수경	진순자	진승철	천상훈	천육범	천재훈	최민서
최민진	최서연	최순화	최오순	최준석	최준섭	최지원	최혁재	최 희	최희재
한기철	한효준	함송희	호서원	홍선영	홍성은	홍인애	황상인	황예성	총 199명

본 공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헌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신앙생활 회복과 교회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다시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8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성교회 당회